

- 보통의 삶, 당연한 일상을 위한 -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(관계부처 합동)

1 추진 배경 및 정책방향

- **(배경)** 발달장애인*(지적·자폐성장애인)은 인지·의사소통의 제약과 자·타해 등 도전행동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 지원** 필요
 - * ('23) 27.2만명, 전체 장애인의 **10.3%** → ('24) 28.1만명, **10.7%** → ('25) 28.8만명, **11.0%**
 - **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이 낮고(발달 26.4%, 전체장애인 64.8%), 지속 증가 추세
-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(46.2%),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등(29.6%) 가족 전체의 삶이 위협
- 특히, 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심화 우려
 - * 전체 발달장애인 28.8만명 중 성인 20만(69.5%), 노인 1.7만(6.0%) ('25)
- **(추진경과)** 우리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장애인 개인·가족의 어려움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

◆ 국정과제 79 :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

- (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)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.2만명에서 **3만명**까지 확대
- 최종증 대상 통합돌봄 지원 확대, 서비스 단가를 주간활동 단가의 **200%까지** 단계적 인상 등 최종증 지원 내실화

- 발달장애인 관련 과제를 3대 전략, 11대 추진과제, 총 50개 세부 과제로 체계화하고 관계 부처*가 '27년 예산안 발표 계기 발표 추진

* 복지부 35개, 노동부 3개, 교육부 4개, 문체부 4개 등 7개 부처(국토부, 경찰청 등)

①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	②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	③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
[영유아] 조기진단 및 개입 강화	[자립]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구축	[전달체계] 개인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고도화
[아동·청소년] 방과후돌봄 확대 및 특수교육 강화	[일자리]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로 지원 강화	[처우개선] 돌봄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처우개선
[청장년] 돌봄서비스 확대·고도화	[권리] 의사결정지원 및 권리보호 강화	[부모·가족] 정서적 지원 및 정보 제공연계 강화
[고령] 건강관리 및 노후 생활 지원	[여가] 이동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공적서비스 확대	

2 주요 추진과제

1.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

□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 최소화

- **(영유아)**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 확대 및 장애아전문·통합 어린이집 지속 확대를 통해 장애아 양육 부담 경감

* (양육지원) ('26)연 1,200→('27정부안)1,320시간, (어린이집) ('26)2,008→('27정부안)2,088개소

- **(아동·청소년)** 성장기 장애아동 적기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확대, 학령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확대·고도화 추진

* (발달재활) ('26)11→('27정부안)11.6만명, (방과후) ('26)1.15→('27정부안)1.3만명, 1인 집중 신설

- **(성인)** 다양한 낮활동*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확대('26 1.5→'27정부안 2→'30 3만명) 및 선택권 확대 등 프로그램 고도화

* 단축형(일 4시간) 및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, 기술 훈련 프로그램 고도화 등 추진

□ 특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

- **(최중증)** 도전행동(자·타해 등)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단계적 확대('26 2,340→'27정부안 2,760명) 및 중복장애 지원방안 마련 검토

- **(긴급돌봄)** 보호자의 입원·경조사 등 긴급 시 일시적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확대('26 36→'27정부안 39개소) 및 통합운영(최중증 포함) 추진('27~)

2.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

□ 부모 사후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

- **(자립지원)** 「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」 시행('27.3월)에 따라 본사업* 추진('27~) 및 참여 지역 점진적 확대 검토('27 전체 광역→'30 전체 기초지자체)

*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, 일자리, 활동지원 등 연계

- **(근로지원)**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,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및 근로지원인 확대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및 직무 수행 지원

* (지원 표준사업장) ⁽²⁶⁾192→^(27정부안)194개소, (재직자훈련) ⁽²⁶⁾400→^(27정부안)720명

** 장애인 근로지원인 : ⁽²⁶⁾11.7→^(27정부안)12.2천명(지원대상 중 발달장애인이 65.1% 차지)

- **(24시간 돌봄)** 부모 사후 등 보호자 부재 상황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개별 1: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* 추진('27.하~)

* (현재) 주말(토-일)은 원가정 복귀 → (개선) 주말에도 이용 가능

□ 당사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권리보호 방안 마련

- **(후견·재산관리)**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및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

- **(권리보호)**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 대응 역량 강화*, 발달장애인 사법적 권리보장 강화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추진

* 조사 인력 단계적 확충(^(27정부안) 중앙 6→7인, 지역 5→6인)

- **(여가지원)**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,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제공 등 장애 예술 및 스포츠 기회 제공 확대

- **(인식제고)** 편견·차별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, 배려가 필요한 공공시설 중심 심볼 착용(英 해바라기 캠페인 등) 도입 등 추진

< 해바라기 캠페인(해외사례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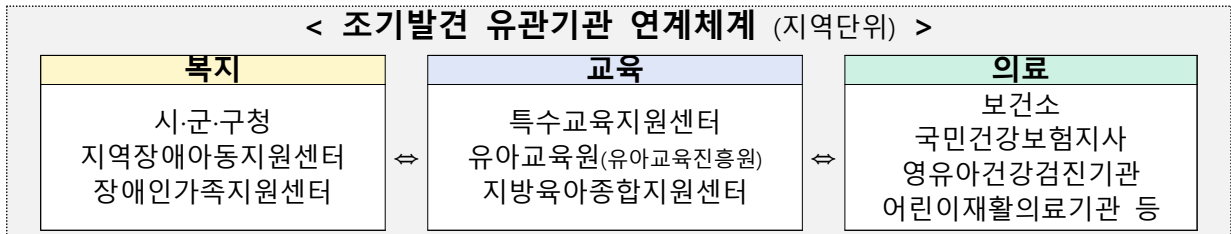
< 비가시적 장애에 대한 표지판(예시) >



3.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**지원체계** 구축

□ 개인별 지원, 사례관리 등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마련

- **(아동기 지원체계)** 조기발견·개입 등 장애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('26) 및 복지-교육-의료체계 연계 추진



- **(통합 사례관리)** 복합적인 욕구 파악, 자원 및 서비스 연계,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원스톱(One-stop) 복지전달체계* 마련 추진

* 생애 전주기 맞춤형 정보제공, 개인별지원계획 수립, 서비스 조정 자문역할 강화

- **(정보 연계)**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허브(APP)를 구축하여 서비스 신청, 지역 내 기관·단체 검색, 실시간 소통 등 서비스 접근성 강화

- **(의료 지원)** 지역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·행동발달증진센터* 확충 및 기능 강화,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기관 확대

*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는 의료지원, 자·타해 등 행동문제 전문 치료

□ 돌봄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근로 여건 조성

- **(전문수당)**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장애 영유아 돌봄 인력 가산수당(1~2천원) 신설('27) 및 최종중 통합돌봄 종사자 지속 처우개선*

* ('26) 종사자 전문수당 월 20만원

- **(보험)**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위험부담 완화를 위해 '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*'의 보장범위·수준 및 가입대상 확대

* 종사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, 종사자·이용자 상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